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7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: 강경숙·차규근·황운하

김준형 · 정춘생 · 김재원

신장식 · 서왕진 · 강유정

백선희 • 김선민 • 김문수

진선미 • 고민정 • 문정복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체적·정신적·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·중·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지식·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장애를 가진 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,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·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 활 적응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제7절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9조의2(언어재활사의 배치) ① 특수학교에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 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·도 교육행정기관에 둘 이상 의 인근 특수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언어재활교육을 담당할 순 회언어재활사를 둔다.

② 제1항의 언어재활사의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9조의2(언어재활사의 배치) ①
	특수학교에 「장애인복지법」
	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
	를 두거나 시·도 교육행정기
	관에 둘 이상의 인근 특수학교
	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언어재
	활교육을 담당할 순회언어재활
	<u>사를 둔다.</u>
	② 제1항의 언어재활사의 배치
	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	령령으로 정한다.